

☞ 보도일시: 2020. 3. 16.(월) 석간,
<인터넷 2020. 3. 16.(월) 11:00 이후>
☞ 총 6쪽

❖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
과 장 최태호 (044-202-7404)
서기관 조형근 (044-202-7406)
사무관 윤주희 (044-202-7413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「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 제정

- 3.16.~9.15.까지 6개월 간,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(75→90%)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3월 16일자로 「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를 제정했다.
 -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(퇴직자 포함)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,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.
 -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.

<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>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.
 - 「관광진흥법」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·신고증·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
□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N752)이나 「관광진흥법」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
-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(55101) 및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이거나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호스텔업,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
-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(49232), 외항 여객 운송업(50111), 내항 여객 운송업(50121),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(50201), 항만 내 여객 운송업(50202) 및 항공 여객 운송업(51100)이거나
 - 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,
 - ㉡ 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,
 - 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,
 - ㉣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라 국내·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
-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R901)이거나 「공연법」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

<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>

□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, 항공사,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.

-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,845개소, 171,476명으로 추산된다.

※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: 5,599개소, 111,569명 (2020년 1월 기준)

-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「관광진흥법」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*를 고려하면,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예: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「관광진흥법」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

<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>

□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.

① 먼저,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.

-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·휴직수당의 최대 66%*에서 90%까지로, 1일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지고

*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(20.2.28)」에 따라 한시적으로 75% 지원

-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▲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, ▲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.

- 아울러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,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,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.

-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,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.

- 또한,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*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%에서 300%로 상향(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)된다.

* 지원단가: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) 100%→150%, ▲1,000인 미만 기업: 60%→100%, ▲1,000인 이상 기업: 40%→90%

②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

-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한도가 확대되고, 소득요건이 완화된다.

- 임금체불 생계비 용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, 자녀 학자금 용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, 상환기간은 최대 5년*에서 최대 8년**으로 연장된다.

* 거치 1년, 상환 3~4년

** 거치 1~3년, 상환 3~5년

- 임금감소·소액생계비 용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,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.

· 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(20.2.28)」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.

- 직업훈련 생계비 용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,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.
- 아울러,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%에서 20%로 완화되고,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.
- 또한,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.

□ 이재갑 장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”라고 하면서,

- “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‘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’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

<붙임>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(☎ 044-202-7406), 윤주희 사무관(☎ 044-202-74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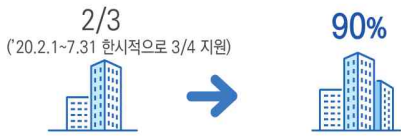


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



고용유지지원금 (유급 휴업·휴직) 지원 강화

지원수준 상향 (우선지원대상기업)



* 대규모기업 1/2~2/3 ⇒ 2/3~3/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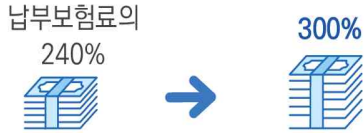
지원한도 인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



* 대규모기업 6.6만원

사업주 훈련지원 확대

지원한도 상향 (우선지원대상기업)



* 대규모기업: 100% ⇒ 130%

지원단가 상향 (우선지원대상기업)



* 1,000인 미만 60% ⇒ 100%, 1,000인 이상 40% ⇒ 90%

고용·산재보험료



건강보험료



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

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연신고 과태료



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

각 부처 운영 13개
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

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
프로그램 이수자 포함



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

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
상환기간 연장	소득요건* 완화	학자금 용자 확대
<p>최대 5년 → 최대 8년</p>	<p>임금감소·소액생계비 (만원)</p> <p>월181 → 월222</p> <p>그 외 (만원)</p> <p>월259 → 월317</p>	<p>고교생 연 5백만원 → 고교, 대학생 연 7백만원</p>

*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한시적(20.3.9~7.31)으로 모든 용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

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한도 증액
<p>1천만원 → 2천만원</p>

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
대상 확대
<p>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→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</p>
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

-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→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
-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 → ②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
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요건 완화

- 중위소득 100% 이하 → 소득요건 면제

훈련연장 급여 지급 요건 완화

- 기술자격증 소유 등 4개 요건 충족 →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

코로나19 예방수칙



꼭!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

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

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

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


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

특히 노인·임산부·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



마스크 착용하기



외출 자제, 1-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



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 자제
관할 보건소, 1339, 지역번호+120으로 먼저 상담하기



의료기관(선별진료소)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
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단,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

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,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



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